

# 예 산 총 칙

2008년도 간주예산 2 차

제 1 조 2008년도 세입·세출 예산총액 및 회계별로 일시 차입할 수 있는 최고액은 다음과 같다.

(단위:천원)

구 분	세입·세출예산총액	일시차입한도액
합 계	179,924,383	5,397,731
일반회계	173,404,709	5,202,141
특별회계	6,519,674	195,590
기타특별회계	6,519,674	195,590
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	320,474	9,614
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기금특별회계	417,044	12,511
주차장특별회계	5,272,362	158,171
지하수관리 특별회계	198,573	5,957
기반시설 특별회계	311,221	9,337

제 2 조 세입·세출 예산의 명세는 별첨 "세입·세출 예산"과 같다.

제 3 조 2008년도 일시차입금 한도액은 상기 제1조에 의한 일시차입한도액으로 한다.

제 4 조 2008년도 예비비는 10,389,785천원으로 한다.

제 5 조 지방재정법 제47조 제1항 단서규정에 의한 총액인건비에 포함된 경비는 상호 이용할 수 있다.